

제안 설명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고령군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입니다.

평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응급환자의 보호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입 및 유지 등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 제4조, 제5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8조, 제9조에서는 응급의료 장비의 관리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적정한 집행에 관한 사항과 재정적 지원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일

보건행정과장 박 현 자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보건행정과장)
제출 연월일	2024.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 . .

제출자 : 고령군수

1. 제정이유

- 응급환자의 보호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응급처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응급의료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응급의료 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적정한 집행,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나. 입법예고 : 예고완료(2024. 8. 26. ~ 9. 18.), 특이사항 없음
- 다. 예산관련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라. 성별영향평가 : 평가완료(특이사항 없음)
- 마. 규제심사 : 규제사항 해당없음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고령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재정 지원)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입 및 유지비용
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권장)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대상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개설자 등”이라 한다)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어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 등은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보건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처치교육)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구급차등의 장비 및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 응급실 운영인력 인건비 등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응급실 운영 재료비, 인건비 등 물가상승 및 인구 감소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재정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예산 현황을 기준으로 추정
- 지원 규모 (단위 : 천원)

항목	산출내역	지원금액
응급실 운영 인건비	응급실 운영인력 × 15,000,000원 × 12개월	180,000

- 응급실 수지 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총 계		수 입			지 출		
				계	진료수입	보조금	계	인건비	기타
2023	응급실	-510,447	-257,643	640,149	430,149	210,000	897,792	834,242 (130%)	63,550
	응급실외		-252,804	5,058,272	4,691,859	366,412	5,311,076	2,892,356 (57%)	2,418,720

※ 23년 결산금액 -257,643,000원 × 70% ≒ 180,000,0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지원금액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4. 재원조달 방안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군비)

5. 부대의견 :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인력 인건비 등 지원으로, 2028년까지 5년간 180,000천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6. 작 성 자 : 보건행정과 지방의료기술서기보 김경아 (054-950-7927)

< 관련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연 락 처	(054) 950 -7927